

# 건설제도 알리미 2017. 08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CAK 대한건설협회



## 1 조달청 '설계서 e-열람 서비스' 시행(17.7.21)

### ■ 개요

-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는 설계서 e-열람 서비스\*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내려받기 가능

\* 설계서 e-열람서비스: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(설계도면, 시방서)를 게재하면,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

- 다만, 수요기관에서 설계서 전자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

※ 협회건의 반영

### ■ 열람 방법

- 해당공사의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

-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약서에 동의하여야만 설계서 열람 가능

※ 열람방법 : 나라장터 → 시설공사 입찰공고 → 설계서 → 설계서다운로드

- 일반공사의 경우 나라장터 공사 등록업체는 모두 열람 가능

- 다만,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공사(PQ, 실적제한)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통보업체만 열람 가능

【시행시기 : '17.7.21일 이후 조달청 계약 접수분부터 적용】

## 2 |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· 시행(17.7.1)

### ■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(제1조~제2조, 제54조 [별표2])

- 강제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
  - 가설기자재는 총 30여종이 있으나,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제파이프 서포트 등 9종만 대상으로 시행

### ■ 레미콘·아스콘 공장에 대한 중복점검 제외(제34조의2)

- 「산업표준화법」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레미콘·아스콘 공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,
  - 지침[별지 제8호 서식] 전체 점검항목 중 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점검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

### ■ 레미콘·아스콘 공장에 대한 발주청의 특별점검규정 개선 등(제35조)

- 레미콘·아스콘 등의 불량자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

### ■ 그 외 자구 및 적용 조항 오류, KS 시험방법 등 수정